

구매론 거래기업 약정서

(판매기업용)

년 월 일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인)

본인 (인)

주소 _____

--	--

은행과 구매업자 사이의 구매론 약정서 양식,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수령하였으며,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

(인)

_____ (이하 “본인”이라 한다)은 _____
(이하 ‘구매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 및 용역의 거래대금 회수와 관련하여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목적

구매기업이 본인의 물품 및 용역의 거래대금을 은행의 구매론을 이용하여 결제하고, 본인은 그 대금을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거래조건

- ① 본인은 만기일 전 영업일까지 시스템, 우편(등기우편, 퀵서비스 및 전문택배업체 (DHL, FEDEX 등)를 이용한 서비스) 또는 은행 내방을 통하여 은행에 할인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우편에 의하여 할인 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은 할인 신청서 발송 즉시 은행에 전자우편을 통하여 동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은행은 본인으로

부터 우편에 의하여 할인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통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본인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그 사실을 통지한다.

- ② 제 1 항에 의거, 본인이 우편에 의하여 할인 신청을 한 경우, 은행은 할인 신청서상의 예정 할인일에 할인된 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 후, 해당 거래 할인조건을 전화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은행이 예정할인일보다 늦게 할인 신청서를 수령한 경우,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은 본인에게 동 사실을 전화로 통지한 후 본인의 지시에 따라 해당 할인신청건을 처리하기로 한다.
- ③ 본인이 구매기업에 대한 거래대금을 만기일 전에 회수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할인금액 및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는, 구매기업과 은행이 협의하여 결정한 할인율 및 수수료 적용 기준에 따른다.
- ④ 본인은 은행에 신청한 이메일 주소로 제 3 항의 할인율 및 수수료 적용기준이 명시된 통지서를 수령한다.
- ⑤ 구매기업의 거래승인 요청으로 은행이 거래승인을 하였지만 본인이 은행에 할인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기업이 거래승인 취소요청으로 은행이 취소처리한 경우, 은행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은 이의를 제기 하지 않기로 한다.
- ⑥ 기타 거래조건은 구매기업과 은행이 약정한 계약내용(은행이 본인과 본 약정을 체결 할 당시 교부한 구매자용 구매론 약정서 양식에 기재된 내용을 의미함)에 따르기로 하며 구매기업과 은행 사이의 구매론 약정서 양식의 내용은 이 약정의 일부를 구성 한다.

제 3 조 할인된 금액의 입금

- ① 본인은 만기일전에 할인신청을 함으로써 거래대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으며, 본인이 할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만기일에 거래와 관련된 수수료를 차감하고 거래 대금을 본인이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한다.
- ② 본인은 구매기업이 구매론으로 결제한 금액을 분할하여 은행에 할인 신청할 수 있으며, 할인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할인금액 = 할인신청금액 × (할인일의 CD금리+할인가산금리) × 할인일수 ÷ 365
(윤년은 366 일로 적용한다.)
(할인일수는 할인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일수)
- ③ 본인이 판매기업용 구매론 신청서를 통해 자동할인하기로 약정한 경우, 은행은 본인의 별도 할인신청이 없더라도 자동할인일로 지정된 날에 할인금액과 승인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정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다.

제 4 조 압류, 가압류 등의 사유발생시 처리

본인은 은행이 거래승인한 매출채권이 제 3 채권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등이 발생한 경우 은행에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은행은 신규 거래승인 및 거래대금의 지급을 중단하기로 한다. 또한, 은행은 기거래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은행은 동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이를 재개할 수 있다.

제 5 조 면책

은행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은행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제외하고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본조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 20 조(손실부담 및 면책)를 적용하기로 한다.

- ①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 ②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요인에 의한 은행의 통신기기 및 회선장애 또는 전산장애로 인한 업무처리의 지연이나 불능
- ③ 쌍방이 합의하거나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한 사항
- ④ 은행의 통상적인 업무처리절차에 의거 고의나 과실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사항

제 6 조 구매기업의 거래상대방 확인 등

본인은 은행이 KYCC(구매기업의 거래상대방 확인)등 법령, 내부 정책이나 내규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르기로 한다.

제 7 조 계약의 해지 등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30 일 사전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